

계약 구비서류 안내(일반공급)

구분	서류유형	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	비고
	필수	추가 (해당자)		
공통	○		·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	
	○		· 인감도장, 인감증명서(아파트 계약용, 본인발급용) 2통 또는 본인서명확인서	
	○		· 주민등록표 등본(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, 세대 구성일 및 사유, 발생일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), (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추가)	
	○		· 주민등록표 초본 [전입발생일, 주민등록번호, 과거 주소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), 과거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 주 성명/관계를 포함하여 발급]	
	○		·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	
	○		· 가족관계증명서("상세"로 발급)	
	○		· 출입국 사실증명원(발급일 기준일 2018년 10월 18일)	
		○	·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(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부) ·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(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)	
일반공급 (가점제 당첨자)		○	· 직계 존·비속의 주민등록표 초본(직계 존·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) ※직계존속 3년이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만 30세이상 직계비속 1년 이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	
		○	· 직계 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(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)	
		○	· 혼인관계증명서 (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)	
		○	· 직계비속의 혼인관계증명서 (만 18세 이상의 미혼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)	
일반공급 (군인)		○	·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 입주자저축에 6개월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·군 복무기간(10년 이상)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부, 청약통장 순위(가입)확인서	
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(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)		○	·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	
		○	·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	
		○	· 소형/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	
		○	·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	
		○	· 부적격 소명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	

※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(2019.10.18.)이후 발행한 원본에 한하며,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.(단,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)

※ 거주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것만 인정함.)

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"주민등록번호",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 및 "주소변동이력"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반드시 "주민등록번호",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 및 "주소변동 이력"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아야 함.

구분	금융 기관명	계좌번호	예금주	
AIBL	계약금 및 분양대금 납부계좌	국민은행	389837-01-014873	(주)무궁화신탁
	발코니확장비 납부계좌	국민은행	389837-01-014886	(주)무궁화신탁